

# 올해부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 3월 말에서 4월 말로 연장

- 국세청, 2022. 3

-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. 2.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,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.
  -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.
  - 또한, 법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(구 지정기부금단체)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(5. 2.까지)해야 합니다.
  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  -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\*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'홈택스 내비게이션'을 도입하고,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'작성 요령과 사례'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움 말을 제공합니다.
    - \*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, 결산서류 공시, 의무이행 여부 보고, 기부금 모금 활용실적 공개
  - 또한,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하여세법상 의무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.

■ 1차 교육(4. 1.) | 접수: '22. 3. 21.~3. 30. ■ 2차 교육(4. 8.) | 접수: '22. 4. 1.~4. 6.

- 앞으로 국세청은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,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## 1

###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

- (출연재산 등 보고)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「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

고서, 「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」, 「외부회계 감사보고서」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.

\* (접근경로) 홈택스>신고납부>일반신고>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

-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1개월 연장되어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 이행기한이 4월 말로 일원화되었습니다.

\* 올해 4.30.은 휴일로 5.2.까지 제출

**| 공익법인 신고의무 이행기한 |**

신고의무	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		④ 결산서류 등 공시
	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		⑤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
	③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		⑥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
			⑦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
이행 기한	종전	3월 말	4월 말
	현행	4월말	

- (결산서류 등 공시)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.2.까지 재무제표, 기부금품의 수입·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.

\* (접근경로) 홈택스>세금종류별 서비스>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>공시/공개 등록하기

-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합니다.

**| 공익법인 주요 신고의무 및 의무대상 |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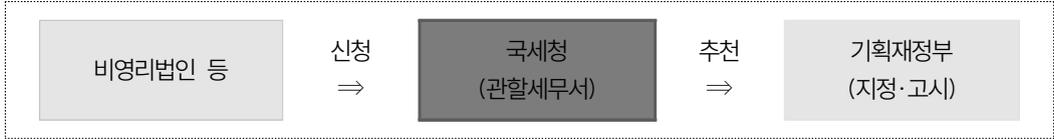
주요 신고의무	의무대상
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	▶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
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	▶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
③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	▶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
④ 결산서류 등 공시	▶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

**2 올해부터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세요**

- (지정신청) 공익법인(舊 지정기부금단체)으로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요건\*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구비서류를 포함한지정추천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\*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,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, 기부금 공개를 정관에 포함 등

| 공익법인 지정·고시 절차 |



- 신청기간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, 국세청장(관할세무서장 포함)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 말일에 지정·고시합니다.

| 공익법인 신청기간 및 지정·고시일 |

구분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신청기간	'21. 10. 12. ~ '22. 1. 10.	'22. 1. 11. ~ 4. 11.	'22. 4. 12. ~ 7. 11.	'22. 7. 12. ~ 10. 11.
지정·고시	'22. 3. 31.	'22. 6. 30.	'22. 9. 30.	'22. 12. 31.

- (의무이행 보고)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\*를 이행해야 하며, 올해부터는 그 결과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.

\*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,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, 결산서류 공시 등

-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. 2.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,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|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기관 변경 |



3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세요

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

- (서비스 개요)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공익법인 내비게이션은 ①출연재산 보고서 제출, ②결산서류 공시, ③의무이행 여부 보고, ④기부금 모금·활용실적 공개 의무에 대해 3단계(안내문 선택→보고서 작성→보고서 관리)로 구성되어 제공됩니다.
- (서비스 내용) 홈택스에 접속 즉시 내비게이션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, 공익법인별로 이행

해야 하는 신고 종류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.

**| (예시) 공익법인 유형별 내비게이션 안내 |**

공익법인 유형	내비게이션 안내 여부			
	출연재산 보고	결산서류 공시	의무이행 여부 보고	기부금 활용 실적 공개
① 출연재산이 있는 사회복지법인	○	○	○	○
② 공익목적 기부금을 받는 공익 법인(법인령§39①2.다)	○	○	×	×
③ 부동산, 주식 등을 출연받은 종교단체	○	×	×	×

- 공익법인은 종전처럼 신고 종류별로 작성 화면을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[보고서 작성하기] 항목을 선택하면 작성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신고도움자료 확인, 작성요령 동영상 보기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**신고지원 서비스 확대**

- (신고도움 확대) 공익법인이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항목별 작성 방법과 사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제공합니다.
  - 설립출연자와 이사, 부동산·주식 보유 현황과 같이 작성 내용은 많으나 변동사항이 적은 항목까지 미리채움을 확대\*하고,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대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\*\*를 제공합니다.
    - \* (기존 항목) 기부금 이월잔액, 전기 재무제표, 공익목적사업 수익현황 등
    - \*\*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, 특수관계 있는 임직원에게 급여 지급 등
  - 또한, 각 지방청과 모든 세무서에 「공익법인 전문상담팀」(142개)을 운영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(온라인 설명회 개최) 세무 경험이 부족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하여 세법상 의무,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.

**| 온라인 세법교실 신청 안내 |**

	1차	2차
교육 내용	①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③ 결산서류 공시서식 작성 방법	②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방법 ④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방법
진행 방식	Webex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	
교육 일정	4. 1.(금) 10:00-13:00	4. 8.(금) 10:00-13:00
신청 기간	3. 21.-3. 30.	4. 1.-4. 6.
신청 방법	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(taxstudy.nts.go.kr)→온라인 세법교실→참가신청	



## 4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강화됩니다

-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,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·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  - (대규모 공익법인) 자산·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「공익법인 전담팀」에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.
  - (일반 공익법인) 그 외 공익법인은 전산분석을 통하여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특히,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「공익법인 조사전담팀」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.
-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,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## 참고자료

### 1 공익법인 정의와 세제상 혜택

- 공익법인이란 (상증법시행령 §12)
  -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아래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

#### 공익사업유형

-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
- ②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사업
- ③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- ④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- ⑤ 법인세법§24②1호의 기부금(중전 법정기부금)을 받는 자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(한국학교, 전문모금기관)
- ⑥ 법인세법 시행령§39①1호 따른 공익법인(중전 지정기부금단체) 및 소득세법 시행령§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(중전 기부금대상민간단체)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
- ⑦ 법인세법 시행령§39①2호 다목에 따른 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·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

※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

-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종중, 동창회, 영업자 단체 등
- 국가기관, 정당, 조합법인
-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
- 사내근로복지조합
-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
- 공원묘원, 납골당

□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

- (상속증여세)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시점에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(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)
- (법인세) 수익사업만 법인세 신고·납부 의무가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이자소득·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
- (부가가치세)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·용역에 대해 면제

## 2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

□ 공익법인의 협력의무

의무사항	관련 법령	내 용	의무위반 시 가산세
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	상증법 §48 ⑤, §78 ③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</li> <li>• (제출) 결산에 관한 서류,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</li> <li>• (기한)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☞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&gt; 신고납부 &gt; 일반신고 &gt;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제출·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x 1% (1억 원 한도)</li> </ul>
결산서류 등 공시의무	상증법 §50의3, §78 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모든 공익법인(종교법인 제외) 다만, 자산총액 5억 원 미만인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가능</li> <li>• (기한)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</li> <li>• (방법)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☞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&gt; 세금종류별서비스 &gt; 공익법인 공시 &gt; 결산서류 등 공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정 요구(1개월 이내 공시, 오류 시정)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- 자산총액 x 0.5%</li> </ul>
장부의 작성·비치 의무	상증법 §51, §78 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수입금액 + 출연재산) × 0.07%</li> </ul>



<p>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</p>	<p>상증법 §50②, §78 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</li> <li>• (제출)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아 제출</li> <li>• (기한)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①과 ② 중 큰 금액</li> <li>① (수입금액 + 출연재산) × 0.07%</li> <li>② 100만 원 (1억 원 한도)</li> </ul>
<p>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</p>	<p>상증법 §50 ③, §78 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법인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(종교·학교법인 제외)</li> <li>• (제출) 감사보고서</li> <li>• (기한)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수입금액 + 출연재산) × 0.07%</li> </ul>
<p>전용계좌 개설· 사용의무</p>	<p>상증법 §50의2, §78 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</li> <li>• (기한) 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</li> <li>• (변경·추가)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사용금액의 0.5%</li> <li>• 미신고시 ①,② 중 큰 금액</li> <li>① <math>(A \times B \div C) \times 0.5\%</math> A: 공익수입금액 B: 해당연도 전용계좌 미개설 기간의 일수 C: 해당 사업연도 일수</li> <li>② 대상거래금액 × 0.5%</li> </ul>
<p>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</p>	<p>상증법 §50의4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외부 회계감사의무, 결산서류 공시의무 이행시 기획재정부 「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」에서 정한 회계기준 적용(의료법인, 학교법인 제외)</li> </ul>	
<p>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</p>	<p>법인령 §39⑥ ·§38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지정기부금단체[법인령§39①(1)(가)-(라), (바)]</li> <li>• (기한)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당반기부금단체[법인령§39①(1)(가)-(라)]의 경우 명단공개</li> </ul>
<p>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</p>	<p>법인령 §39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지정기부금단체[법인령§39①(1)(가)-(라), (바)]</li> <li>• (기한)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·공익법인 홈페이지에 공개</li> <li>* 결산서류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공시한 경우 공개한 것으로 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정고시단체[법인령§39①(1)(바)]의 경우 지정 취소</li> </ul>

의무사항	관련 법령	내 용	의무위반 시 가산세
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·보관·제출 의무	법법 §112의2, 법법 §75의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</li> <li>• (제출)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</li> <li>• (기한)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, 5년간 보관</li> <li>• 미작성·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(국기법 §85의5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× 5%</li> <li>• 명세서 미작성 금액 × 0.2%</li> </ul>
계산서합계표 등 자료 제출 의무	법법 §120의3, 법법 §121, 법법 §75의8, 부법 §5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</li> <li>• (제출)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·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</li> <li>• (기한)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</li> <li>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, 비영리법인(수익사업부분 제외)은 가산세 적용 제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제출한 공급가액 × 0.5%</li> </ul>

□ 출연재산 사용에 관한 의무사항

의무사항	관련 법령	내 용	의무위반 시 제재
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	상증법 §48②(1), 상증령 §3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, 3년내 미사용 금액,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</li> </ul>
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	상증법 §48②(4)(5), 상증령 §38④⑦, 상증법 §78⑨(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%, 2년 이내 60%, 3년 이내 90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, 90% 미달 사용금액</li> <li>• 가산세 부과 미달사용금액(1년 이내 30%, 2년 이내 60%) × 10%</li> </ul>
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	상증법 §48②(3)(5), 상증령 §38⑤⑥, 상증법 §78⑨(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80%*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</li> <li>* '22.1.1. 전 개시 사업연도까지 70%(성실 공익법인 80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증여세 부과 <math>\text{출연재산평가액} \times \frac{\text{목적외사용금액}}{\text{운용소득금액}}</math></li> <li>• 가산세 부과 기준미달 사용금액 × 10%</li> </ul>

주식 출연 제한	상증법 §16②, 상증법 §48①, 상증령 §3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%(10%, 20%) 초과 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여세 부과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</li> </ul>
주식 취득 제한	상증법 §48②(2), 상증령 §3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% (10%, 20%) 초과 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여세 부과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</li> </ul>
주식 매각 의무	상증법 §49, 상증법 §78④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96. 12. 31. 현재 동일 내국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등의 5%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한까지 매각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%~20% 이하: 3년 이내('99. 12. 31.) 처분</li> <li>- 20% 초과: 5년 이내('01. 12. 31.) 처분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산세 부과 5% 초과 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가×5%(부과기간: 10년)</li> <li>의무이행 요건충족시 제외</li> </ul>
계열주식 보유한도	상증법 §48⑨, 상증법 §78⑦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%(50%*) 초과 금지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외부감사, 전용계좌 개설·사용, 결산서류 공시 이행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산세 부과 30%(50%) 초과 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가×5%</li> <li>의무이행 요건충족시 제외</li> </ul>
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	상증법 §48②(7), 상증법 §78⑨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,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%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칙: 출연재산가액 1% 이상</li> <li>- 동일주식 10% 초과: 출연재산가액 3%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산세 부과 (사용기준금액 -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)×10%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,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만 부과</li> </ul> </li> </ul>
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	상증법 §48⑧, 상증법 §78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(의료법인 제외)의 현재 이사 수의 1/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, 그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산세 부과기준 초과한 이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·간접경비 상당액 전액</li> </ul>
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	상증법 §48⑩, 상증법 §78⑧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·홍보 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산세 부과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문, 잡지 등</li> <li>☞ 광고, 홍보 비용</li> <li>- 팜플렛·입장권 등</li> <li>☞ 행사비용 전액</li> </ul> </li> </ul>

의무사항	관련 법령	내 용	의무위반 시 제재
자기내부거래시 지켜야 할 일	상증법 §48③, 상증령 §39	•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·수익 금지	• 증여세 부과 - 무상사용 ☞ 출연재산가액에 부과 - 낮은 가액으로 사용 ☞ 차액이 증여가액
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금지	상증법 §48②(8), 상증령 §38⑧(2)	• 출생지·직업·학연 등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	• 증여세 부과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·이익
공익법인 해산 시 지켜야 할 일	상증법 §48②(8), 상증령 §38⑧(1)	•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	• 증여세(법인세) 부과 국가 등에 귀속하지 않은 재산가액

### 3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서류

□ 제출대상 및 서류 목록

구분	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	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
대상 법인	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	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
제출 대상 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</li> <li>2. 출연재산·운용소득·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</li> <li>3.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</li> <li>4.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</li> <li>5. 운용소득의 사용 명세서</li> <li>6. 주식(출자지분)보유명세서</li> <li>7. 이사 등 선임명세서</li> <li>8.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</li> <li>2.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</li> <li>3.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</li> <li>4.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</li> <li>5.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</li> <li>6. 장부의 작성·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</li> <li>7. 보유부동산 명세서</li> </ol>
	-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(서면제출) -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서식 외에 세무확인서,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등을 추가제출 하여야 함	



제출 방법	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> 신고/납부 > 일반신고 > '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' - (제출기한)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	
제출 제외 법인	-	1. 총자산가액 5억 미만인면서 수입금액,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공익법인 2.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(출연자 등이 5%미만 출연) 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

#### 4 공익법인(舊지정기부금단체) 지정신청 및 의무이행

##### □ 공익법인 지정신청 구비서류

- ①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서 ③ 정관 ④ 최근 3년간(2019년~2021년) 결산서 및 2022년 사업연도 예산서 ⑤ 향후 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
- ※ 참고사항
- ① 사업계획서, 공익활동보고서는 법정 표준서식이 없으므로 자유양식으로 작성
- ② 공익활동보고서는 직전 지정기간 동안의 공익활동사항을 작성

##### □ 공익법인 지정요건

-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등 확인
- ② “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·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”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
-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“홈페이지를 통해 「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」을 공개한다”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,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/국세청/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
- ④ 해당법인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
- ⑤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

□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

- 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(기재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공익법인만 해당)
  - (가)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
  - (나)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
  - (다)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등
-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
-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단체의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
- ④ 공익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
- ⑤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/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내역이 있을 것
- ⑥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
- ⑦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
- ⑧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

**5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제(舊성실공익법인 확인제)**

□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제 개요

- '22년부터 주식기준 초과보유 공익법인<sup>1)</sup>은 매년 관련요건 충족 여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<sup>2)</sup>됨
  - 1)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%를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, 총재산가액의 30%(50%)를 초과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(상증령 §41의2)
  - 2) (기존) 국세청이 5년마다 요건 확인 → (개정) 공익법인이 매년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

< 관련요건 충족시 주식보유 한도 >

- 동일기업 주식: (요건 미충족 시) 지분율 5% > (충족 시) 지분율 10% 또는 20%\*
  - \*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·장학·사회복지 목적 법인
- 계열기업 주식: (요건 미충족 시) 총재산가액의 30%(50%\*) > (충족 시) 제한 없음
  - \* 회계감사, 전용계좌 개설·사용,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이행시 50% 적용

□ 개정내용

구분	성실공익법인 확인	의무이행 신고
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주식기준을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년마다 지방국세청장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아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주식기준을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</li> </ul>

요건	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%이상 사용 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③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 법인을 광고·홍보 금지 ⑤ 외부회계감사의무 ⑥ 전용계좌 개설·사용 ⑦ 결산서류 공시 ⑧ 장부 작성·비치	①~④ 좌동 - 출연재산가액의 1% 상당액 이상 사용 의무* 추가 * '22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⑤~⑧은 주식보유관련 의무이행 요건은 아니지만, 공익유형 및 규모와 관계없이 이행해야 함 ▶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
제재	▪ (요건 미충족시) - 주식 5%초과 보유에 대한 증여세 부과 - 총재산가액 30%초과 보유시 가산세 부과	▪ (요건 미충족시) - 주식 5%초과 보유에 대한 증여세 부과 - 총재산가액 30%초과 보유시 가산세 부과 ▪ (미신고 가산세 신설) 자산총액의 0.5%

## 6 주요 세법개정 내용

### □ 공익법인 의무이행기간 합리화

- (개정내용) 출연재산보고,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,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서 4월로 연장
- (적용시기) '22. 1. 1. 이후 의무이행 하는 분부터

법령	현행	개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§41, 43	○ 3. 31. 이내 -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-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-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○ 4. 30. 이내 - 결산서류 등 공시 - 주식 5% 초과 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의무 이행 여부 신고	○ 3. 31. → 4. 30. 이내 (좌동)

### □ 운용소득 공익목적 사용의무 강화

- (개정내용) 모든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80%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
- (적용시기) '22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

법 령	현 행	개 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§38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공익법인: 운용소득의 70%</li> <li>○ 성실공익법인: 운용소득의 80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모든 공익법인: 운용소득의 80%</li> </ul>

□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

- (개정내용) 총자산가액 중 공익법인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가액은 직전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으로 산정
- (적용시기) '22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

법 령	현 행	개 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§38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연재산가액 산정기준</li> <li>-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가액 &lt; 단서 신설 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 추가</li> <li>- (좌동)</li> <li>-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평균가액</li> </ul>

□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

- (개정내용)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 5%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1% 미달 사용시 증여세 추가 과세
- (적용시기) '22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

법 령	현 행	개 정
상속세 및 증여세법 §16, §4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연재산가액 의무사용 비율</li> <li>- 주식 10% 초과보유 성실공익법인 : 출연재산의 3%</li> <li>- 그 밖의 공익법인 : 출연재산의 1%</li> <li>○ 위반시 제재</li> <li>- 3% 또는 1% 미달사용액의 10%</li> </ul>	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반시 제재 강화</li> <li>- 3% 미달사용시: 미달사용액×10%</li> <li>- 1% 미달사용시: ㉠+㉡</li> <li>㉠가산세: 미달사용액×10%</li> <li>㉡증여세: 주식5% 초과보유분</li> </ul>

□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

- (개정내용)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개 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

- (적용시기) '22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

법령	현행	개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§43의6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산규모 1,000억 원 이상 공익법인 대상</li> <li>※ '22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절차</li> <li>지정자료 제출(~3.14.) → 감사인지정 및 사전통지(~4.18.)</li> <li>→ 의견제출(~5.2.) → 감사인통지(~5.16.) → 재지정 요청(~5.30.)</li> </ul>

## 7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

### 사례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임의로 방치하여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위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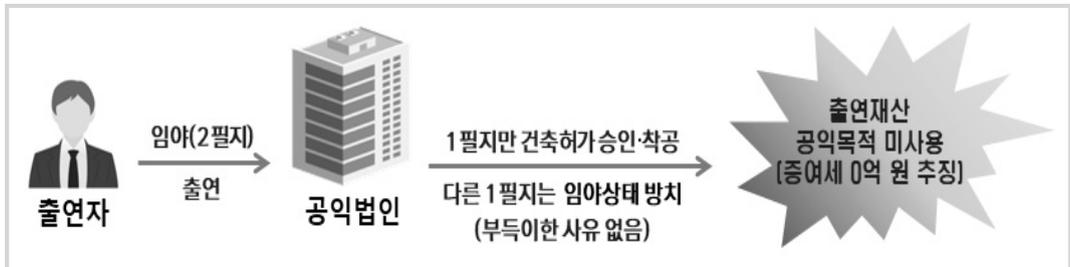
□ 기본사항

- 사단법인□□□

□ 관련법령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§48②, 같은법 시행령 §38

- (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)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
  - 다만,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(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)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경우는 제외

□ 의무위반 내용



- 사단법인 □□□은 출연받은 임야 2필지 중 1필지만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고, 다른 1필지는 특별한 사유없이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야상태로 방치

□ 조치사항

-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0억 원 추정

**사례 2**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,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·간접경비 지출

□ 기본사항

- ○○○재단, ○○○계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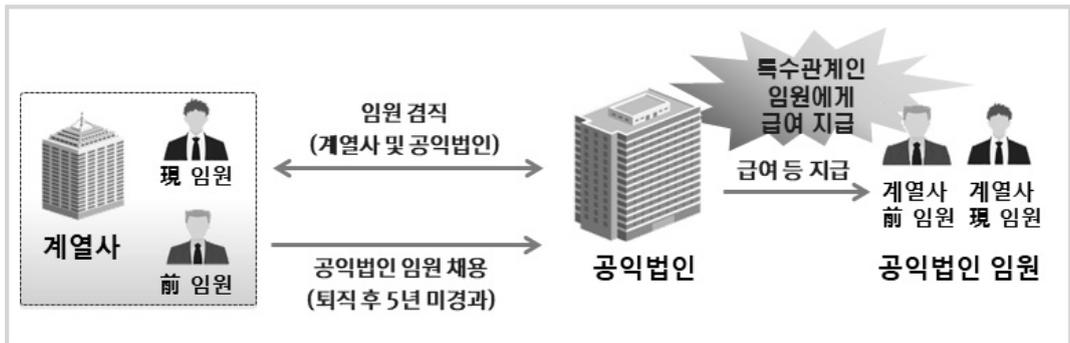
□ 관련법령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§48⑧, §78⑥, 같은법 시행령 §38⑩

- (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제한)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증령 §38⑩에 따른 공익법인(의료법인 제외)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

※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§38⑩

1.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
2.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
3.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

□ 의무위반 내용



- 공익법인이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,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임원을 겸직하도록 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

□ 조치사항

-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·간접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00억 원 추정

사례 3

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,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부당유출

□ 기본사항

- ○○○재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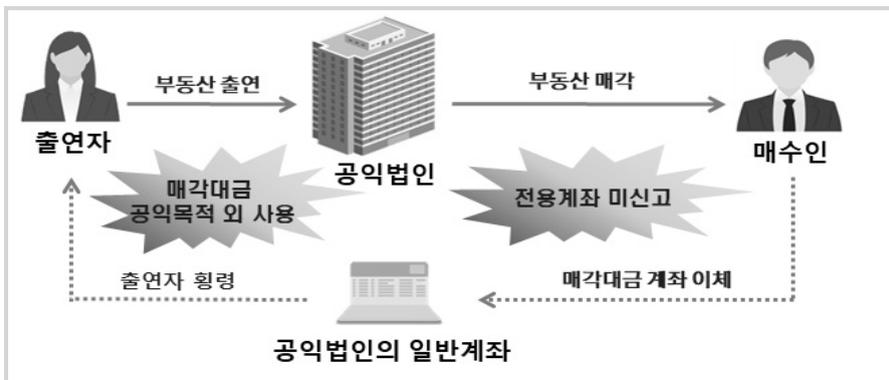
□ 관련법령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§50의2 §48②4, 같은법 시행령 §43의4

- (전용계좌 신고의무)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
- (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) ①과 ② 중 큰 금액의 0.5%('21.12.21. 개정전)

① 공익수입금액 총액 ② 전용계좌 대상거래금액 합계

- (출연재산 매각대금 공익목적 사용)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고,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 90%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

□ 의무위반 내용



-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·신고하지 않고,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계좌로 수령
- 또한, 부동산 매각대금을 출연자가 횡령하여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음

□ 조치사항

-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미신고하여 가산세 00백만 원을 추징하고,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증여세 0억 원 추징